

[별표 7]<개정 1986.11.11>

안전진단기관의 인력·시설·설비기준(제56조 관련)

번호	종 류	인 력 기 준	시 설 · 설 비 기 준
1	공통사항		1. 사무실 2. 장비실
2	종합안전진단기관	1. 안전관리기술사(기계안전) 1인이상 또는 산업안전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1인이상 2. 산업안전기사 1급이상 2인이상 3. 건설안전기사 1급이상 1인이상	1. 회전속도측정기 2. 비파괴검사기 3. 표준온도계 4. 표준압력계 5. 가스농도측정기 6. 산소경보기 7. 가연성가스검지관 8. 절연저항측정기 9.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0. 계전기기시험기 11. 만능회로측정기 12. 재료강도시험기 13. 진동측정기
3	기계안전진단기관	1. 안전관리기술사(기계안전) 1인이상 또는 산업안전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1인이상 2. 산업안전기사 2급이상 1인이상	번호 2의 1호 내지 4호 및 7호에 정하는 기계·기구
4	화공안전진단기관	1. 안전관리기술사(화공안전) 1인이상 또는 산업안전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1인이상 2. 산업안전기사 2급이상 1인이상	번호 2의 5호 내지 7호에 정하는 기계·기구
5	전기안전진단기관	1. 안전관리기술사(전기안전) 1인이상 또는 산업안전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1인이상 2. 산업안전기사 2급이상 1인이상	번호 2의 8호 내지 11호에 정하는 기계·기구

6	건설안전진단기관	1. 건설안전관리기술사 1인이상 또는 건설안전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1인이상 2. 건설안전기사 2급이상 1인이상	번호 2의 12호 및 13호에 정하는 기계·기구
---	----------	---	-------------------------------